

보훈복지 관점에서 살펴본 미 육군의 인사기록 관리 체계 연구

A Study on the Personnel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U.S. Army in terms of Veterans' Welfare

김용찬(Kim, Yong Chan)*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미 육군의 인사기록 관리 시스템
 - 1) 인사기록 관련 조직 및 규정
 - 2) 인사기록의 유형 및 특징
3. 인사기록 정보서비스
 - 1) 미 국립기록청(NARA)의 인사기록 정보서비스
 - 2) 인사기록 정보서비스 유형 및 특징
4. 분석 및 시사점
5. 결론 및 제언

* 육군 인사사령부 소령.

■ 투고일: 2019년 09월 27일 ■ 최초심사일: 2019년 10월 02일 ■ 최종 확정일: 2019년 10월 29일

■ 기록학연구 62, 259-286, 2019, <https://doi.org/10.20923/kjas.2019.62.259>

〈초록〉

본 연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보훈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근간이 되는 군 인사기록의 중요성과 철저한 기록관리의 필요성에 주목하여 미 육군의 사례(육군 군 인사기록(AMHRR), 양방향 인사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iPERMS), 기록정보서비스) 분석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보훈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사회 저변에 군을 예우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육군 군 인사기록(AMHRR), 양방향 인사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iPERMS), 기록정보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draws out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U.S. Army's practices(Army Military Human Resource Record(AMHRR) and interactive Personnel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iPERMS),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and applies it to our military by paying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military personnel records and the thorough records management that are the foundation for promoting the welfare service projects of those who have committed to the nation. Through these,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mooth promotion of veteran welfare projects and to create a climate that honors the military at the bottom of society in the future.

Keywords : Army Military Human Resource Record(AMHRR), interactive Personnel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iPERMS), Archival Information Service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지난 4월 23일,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 이로써 전쟁 당시 전공(戰功)을 세워 무공훈장 수여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에도 실제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와 유가족에게 무공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6·25전쟁의 육군 무공훈장 수여 대상자는 16만 2950여 명에 이르지만 당시 전황이 위급하여 사단장 급 지휘관이 훈장 수여 대상으로 결정된 인원에게 약식증서를 수여했고 전후(戰後) 지속적으로 훈장을 수여하여 왔으나 아직도 5만 4천여 명에게 훈장이 수여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전쟁 당시 병적기록부와 호적 등 국가의 행정체계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군번, 성명, 주소지, 생년월일 등의 착오가 많아 훈장 수여 대상자와 유가족을 찾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토대로 육군은 대규모 탐문활동을 통해 최후의 1인까지 무공훈장을 수여받을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명예선양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¹⁾

한편, 국가보훈처 역시 6월 20일, 노무자나 유격대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했으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받지 못한 이들을 적극 발굴하여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대외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관련 증빙자료 등이 없어진 경우가 많고 동료 보증인을 찾기가 어려운 관계로 지난 2년간 새로 등록된 유공자는 77명에 불과하였으며, 아직까지 총 90만 명 중 42만 명이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지 못한 실정이다.²⁾

1) 국방일보, 2019. 검색일자: 2019. 8. 10, '특별법 제정으로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전개'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190509/1/BBSMSTR_000000010053/view.do

2) 연합뉴스, 2019. 검색일자: 2019. 8. 10, '노무자 등 비군인 6·25 참전유공자 적극 발굴해 보상'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0025600504?input=1179m>

위 두 가지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보훈복지 사업의 당위성과 함께 사업 추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록관리의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건군(建軍) 초기, 그리고 전시(戰時)라는 당시의 불가피한 여건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보다 원활한 보훈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소요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시부터 철저히 기록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보존, 활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보훈과 직결되어 있는 상기 사례와 같이, 군에 복무하는 인원들의 각종 병역 관련 사항들을 수록하고 있는 인사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6·25전쟁 참전국이자 군사적 동맹 관계인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공분야를 비롯하여 학계 및 산업계를 선도하는 기록관리 선진국으로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건국보다 그 태생이 빨랐던 미 육군 역시 선진적인 행정 시스템이 고스란히 인식되어 오랜 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다.

미 육군은 일찌감치 인사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범국가 차원의 인사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다. 기록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수집, 이관, 보존, 활용에 이르기까지 기록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정교한 행정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이를 군에 대한 예우와 보훈을 위한 증빙자료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나아가 개인의 연구 및 일반 국민의 국가관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적 성격의 용도로까지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훈은 물론, 잘못 관리될 경우 전후(戰後) 과다한 행정소요를 촉발할 수 있는 인사기록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미 육군의 인사기록 관리 체계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보훈복지 사업 및 대국민 안보교육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 육군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기록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보훈복지 사업을 비롯한 주요 행정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인사기록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한편, 미 육군의 인사기록 관리 체계에 대하여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첫째, 미 육군에서 인사기록 관리 업무를 총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인 인사사령부 예하 ‘육군 군 기록 분과’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분석한다.

둘째, 미 육군이 법령으로 규정하여 생산, 관리하고 있는 인사기록인 ‘육군 군 인사기록’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미 육군에서 공식적으로 운용하는 인사기록 관리 프로그램인 ‘양방향 인사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의 기능과 특징을 분석한다.

넷째, 미 육군과 정부 사이에 구축되어 있는 범국가적 인사기록 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보고 소셜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과 특징에 대하여 분석한다.

다섯째, 이를 토대로 보훈복지 사업 및 대국민 안보교육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우리 육군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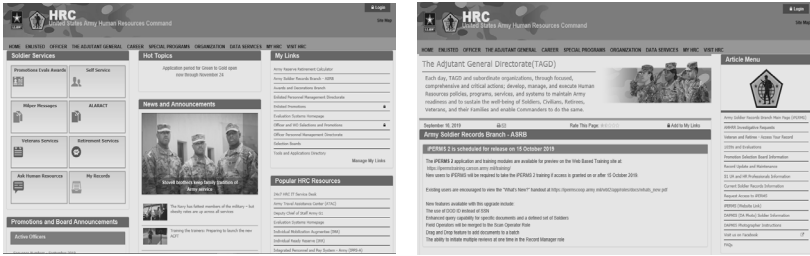
2. 미 육군의 인사기록 관리 시스템

1) 인사기록 관련 조직 및 규정

미 육군의 인사기록 관리 업무는 켄터키 주(州) 포트 녹스(Fort Knox)에 위치한 미 육군 인사사령부(U.S. Army Human Resources Command, 이하 HRC) 예하의 ‘육군 군 기록 분과(Army Soldier Records Branch, 이하 ASRB)’

에서 담당하고 있다. ASRB는 인사사령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각 부대에서 근무하는 기록관리자와 현역군인, 퇴역군인, 기록관리 시스템 관계자들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서비스 표준을 제정하여 각종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미 육군 인사사령부 및 육군 군 기록 분과(ASRB) 웹사이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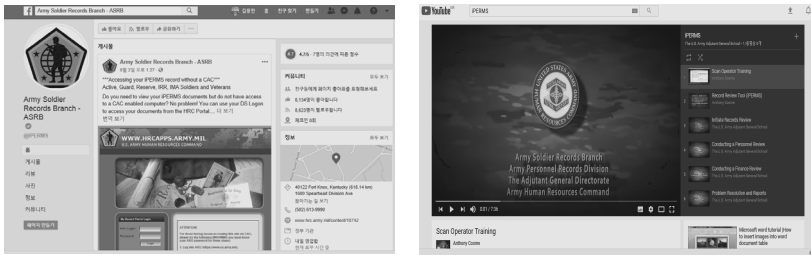
ASRB는 미 육군 인사기록 관리의 핵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양방향 인사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interactive Personnel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이하 iPERMS)를 운용하는 주무 부서로서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주요 인사기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핵심정보 위주로 간략하게 구성된 서식인 인사기록 요약보고서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의 병역 관련 정보를 영구적으로 기록, 보호하여 향후 보훈복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미 국립기록청(National Archives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로 이관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ASRB는 군 내부에서 편성, 운영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과 군인들이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3) 육군 군 기록 분과 웹사이트 (2019). 검색일자 : 2019. 8. 11. <https://www.hrc.army.mil/content/Army%20Soldier%20Records%20Branch%20-%20ASRB>.

을 조성하고 있으며, 최신 게시물과 정보, 피드백을 상호 공유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동영상 웹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iPERMS를 비롯한 기록관리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영상을 제공하는 등 업무수행 측면에서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2 참조).

〈그림 2〉 육군 군 기록 분과(ASRB)의 소셜 미디어 운용 사례⁴⁾



한편, 미주리 주(州) 세인트루이스 소재 국립 인사기록 센터(National Personnel Records Center, 이하 NPRC)는 NARA 산하 기관으로서 매년 140만 건 이상의 군 인사기록에 대한 사본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⁵⁾ NPRC는 종이 사본 및 마이크로피시 형식으로 된 미 육군 인사기록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 기록들은 2002년 10월 1일 이전에 미 육군에서 제대, 퇴역, 사망한 인원들에 대한 기록이다.

미 육군은 1992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사기록을 기존의 종이 사본 및 마이크로피시 형식에서 전자기록 형태로 변환하기 시작했고, 이를 iPERMS에 저장하여 왔다. 1996년 4월 1일에는 미 육군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현역, 예

4) 육군 군 기록 분과 페이스북. 2019. 검색일자 : 2019. 8. 11. <https://www.facebook.com/iPERMS> ; 육군 군 기록 분과 유튜브. 2019. 검색일자: 2019. 8.11. https://www.youtube.com/watch?v=_v1f5Ij30Go&list=PLXTvGB5BFOiTAZTB0HPiWAOUg2LnBZQ1Y&index=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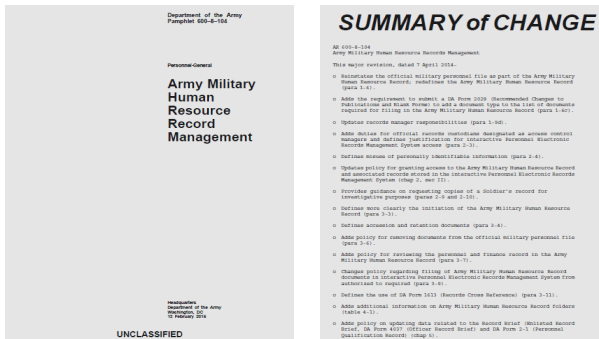
5) 미 국립기록청 웹사이트. 2019. 검색일자: 2019. 8. 11. <https://www.archives.gov/personnel-records-center/ompf-background>.

비군, 주 방위군)이 iPERMS를 통한 전자적 군 인사기록 관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1996년 4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미 육군은 종이 사본 및 마이크로피시 형식의 군 인사기록을 단계적으로 폐지했고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NPRC로 이관된 군 인사기록의 양도 비례하여 감소했다. 이 기간 동안 제대, 퇴역한 군인은 전자 또는 종이 사본 및 마이크로피시 형식의 육군 인사기록(Army Military Human Resource Record, 이하 AMHRR)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다.

2002년 10월 1일 부로 미 육군은 종이 사본 및 마이크로피시 기록을 NPRC로 이관하는 것을 중단했고, iPERMS를 AMHRR의 공식 보관소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 AMHRR은 군인이 제대, 퇴역 또는 사망한 후 62년 동안 보관되며, 62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AMHRR을 NPRC로 이관하여 영구기록으로서 보존,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미 육군의 군 인사기록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AMHRR을 위한 별도의 육군 규정과 실무지침서의 마련으로 이어진다. 미 육군 규정 600-8-104 '육군 군 인사기록 관리(Army Military Human Resource Record Management)', 그리고 이와 동일한 명칭의 실무지침서인 미 육군 팜플렛 600-8-104가 바로 그 예이다(그림 3 참조).

〈그림 3〉 미 육군의 군 인사기록 규정6)



먼저, 미 육군 규정 600-8-104 ‘육군 군 인사기록 관리’는 AMHRR의 생산, 활용, 관리, 유지 및 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모두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총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규정을 제정한 목적과 규정 내에 명시된 주요 용어의 정의, 주요 직위별 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군인은 자신의 AMHRR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며, 본인 기록에 대한 원본 기록을 보유할 의무가 있다. 이는 미 육군이 기록관리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책임을 평시부터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또한 현역뿐만 아니라 예비군과 주 방위군을 포함한 육군 내 모든 제대의 지휘관들은 AMHRR 및 관리 프로그램의 운용을 감독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02년 9월 30일 이전 제대, 퇴역, 사망한 군인의 기록은 62년 동안 NPRC에 보존되며, 2002년 10월 1일 이후 제대, 퇴역, 사망한 군인의 기록은 62년 동안 iPERMS에 보존되다가 63년 째 되는 연도에 NARA로 이관하여 공공기록으로서 보존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장은 iPERMS에 대한 접근 권한과 제한 사항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iPERMS에 포함된 정보 및 기록은 1974년에 제정된 개인 정보 보호법(Privacy Act) 및 육군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인 AR 340-21이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직위 상 단독으로 군 인사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획득하거나 소유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으며, iPERMS의 기록에는 법령으로 보호받고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수행 시 권한이 있고 검증된 인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장에서는 육군 군 인사기록 관리 프로그램(Army Military Human Resource Records Management Program)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AMHRR 관리 프로그램은 일종의 필수 군인 정보관리 프로그램으로서 AMHRR 제출에 필요한 데이터, 정보, 문서의 보관 및 저장에 대한 책임이 요약되어 있다. 또

6) 미 육군 출판국, 2019. 검색일자 : 2019. 8. 11. https://armypubs.army.mil/epubs/DR_pubs/DR_a/pdf/web/r600_8_104.pdf

한 AMHRR을 구성하는 군 인사 정보 및 문서는 안정적인 보존 및 향후 활용을 위해 iPERMS로 처리되어야 함을 규정한다.

4장은 iPERMS에 추가되는 폴더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AMHRR 내부에 추가되는 폴더는 육군이 특정기간 동안 해당 군인에 대한 유효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iPERMS에 포함되는데, 이를 non-OMPF⁷⁾ 폴더라고 하며, 이 폴더의 문서는 반드시 영구기록일 필요는 없으며 NPRC로 전송되지 않는다. 만료시기가 도래하면, 이 폴더에 포함된 문서들은 폐기되며 그에 따른 폐기 인증서가 발행된다.

5장에서는 인사기록 요약보고서 작성을 위한 특정 데이터의 업데이트 프로세스 및 관련 서류에 대해 설명한다. 기록 업데이트가 적용되는 항목으로는 최초 입대일자, 성명, 출생지, 생년월일, 시민권, 복무기간, 복무경력, 해외파병, 상훈이력, 민간 및 군 교육 이력 등 세부적인 항목들이 포함된다 (그림 4 참조).

〈그림 4〉 인사기록 요약보고서(Record Brief) 서식

7) OMPF(Official Military Personnel File) : 공식 군 인사 파일.

한편, 위 규정과 동일한 명칭으로 작성되어 적용중인 미 육군 팜플렛 600-8-104는 규정에 명시된 업무 절차와 정책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 수행 기준 및 지침을 제공하며, AMHRR의 수집, 유지, 활용, 보존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2) 인사기록의 유형 및 특징

미 육군에서 공식적으로 생산 및 관리하는 인사기록은 육군 군 인사기록(AMHRR)이다. AMHRR은 현역 및 퇴역군인, 군무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이는 '공식 군 인사 파일(Official Military Personnel File, 이하 OMPF)'과 재정 관련 문서, 그리고 군 복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서들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AMHRR은 개인의 군 복무 경력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며, 퇴역군인의 보훈 혜택을 위한 증빙서류로서의 기능과 함께, 현역군인의 경력관리 또는 진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미 육군은 개인별 AMHRR이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MHRR은 보존기간에 따라 영구 및 임시 문서를 포함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는 OMPF문서는 영구기록으로서 육군에서 복무한 각 개인의 병역에 관한 문서들의 모음(collection)을 의미하며, 해당 인원이 육군에서 제대 및 퇴역, 또는 사망한 후에 62년 동안 양방향 인사 전자 기록 관리 시스템(iPERMS)에 보존된다. 62년이 경과한 후에는 미 국립기록청(NARA)로 이관하여 영구기록으로서 보존하게 된다.⁸⁾

공식 군 인사 파일로 명명되는 OMPF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다시 인사기록 부문(Personnel Record Portion)과 건강기록 부문(Health Record Portion)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OMPF의 핵심이라 할

8) 미 인사사령부 웹사이트, 2019. 검색일자: 2019. 8. 11. <https://www.hrc.army.mil/content/Army%20Soldier%20Records%20Branch%20-%20ASRB>.

수 있는 인사기록 부문은 각 개인의 병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행정기록으로서 입대일자 및 유형, 군사특기, 근무부대 및 임무, 교육훈련, 보유자격, 상훈이력, 징계이력, 제대 및 퇴역일자, 제대 및 퇴역 유형 등을 포함한다. 일부 OMPF에는 건강기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 인원이 군복무 중 받은 외래, 치과, 정신과 진료에 관한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퇴역과 동시에 건강기록과 인사기록을 함께 이관하는 것이 미 육군의 관행이었으나 1992년부터는 모든 인원의 건강기록을 또 다른 국가기관인 재향군인회(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인사기록과 분리시켰다.⁹⁾

한편, iPERMS는 미 육군이 운영하는 핵심 인사기록 관리 프로그램으로서 AMHRR을 지원하는 공식 전자기록 보관소를 의미한다(그림 5 참조).

〈그림 5〉 양방향 인사 전자기록 관리시스템(iPERMS) 화면



인증 받은 이미지 파일로 구성된 인사기록은 iPERMS에서 TIFF(Tagged Image File Format) 형식으로 저장되며 이는 NARA의 기술 표준을 충족한다. iPERMS는 WORM(Write Once, Read Many)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문서의 이미지를 iPERMS로 가져온 후에는 이미지를 변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문서에 관련된 활동 이력(history of activity)을 감사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갖추고 있다.

9) 미 국립기록청 웹사이트, 2019. 검색일자: 2019. 8. 11. <https://www.archives.gov/personnel-records-center/ompf-background>.

iPERMS의 도메인 관리자(Domain Administrators)는 각 부대의 규모에 따라 크게 Scan Operator(SO), Authorized Official(AO), Record Manager(RM)이라고 하는 세 가지 범주의 운영자 역할을 부여한다. SO는 AMHRR과 관련되어 생산, 접수한 모든 문서를 스캔하여 업로드 하는 권한을 갖는다. AO는 도메인 관리자가 지정한 기록에 대해 검토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대대 또는 여단 급 부대에 대해 접근 권한이 있다. RM은 도메인 관리자만 부여할 수 있으며, 연간 재무 및 인사기록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SO, AO 및 RM 권한을 얻으려면 해당 인원에게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필수 웹 기반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미 육군에 소속된 모든 인원과 각 부대 RM은 매년 새로운 부임지 전입 기간 동안, 그리고 육군에서 전역하기 전에 iPERMS에서 RRT(Record Review Tool)를 사용하여 개인별 인사 및 재무기록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연례 기록 검토(The Annual Record Review)라고 한다. RM은 기록이 생성되고 관련 작업이 완료된 후 20일 이내에 iPERMS에 문서를 업로드 할 책임이 있으며, 공식 기록 관리인(ORC : Official Records Custodian)에게 개별 기록에 대한 모든 업데이트 및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한다. ORC는 iPERMS용 문서를 처리하고 색인을 생성하며, iPERMS의 AMHRR과 관련하여 RM 및 각 개인에게 사용자 지원, 교육 및 고객 서비스를 제공한다. ORC는 또한 iPERMS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인원을 관리하고 제어하며, 문서의 중복, 착오, 허위 여부를 바로잡는다.

3. 인사기록 정보서비스

1) 미 국립기록청(NARA)의 인사기록 정보서비스

미 국립기록청(NARA)은 미국의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직원 수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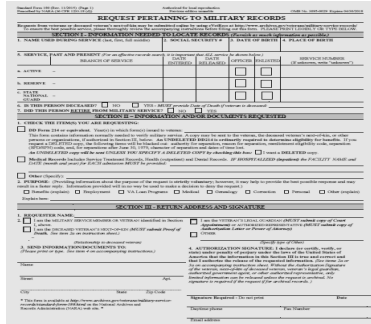
3,000여 명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카이브 조직이다. NARA는 국가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기록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및 군인 등 공공분야 종사자의 인사 관련 영구기록도 관리하며, 이를 역사나 계보 연구를 위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NARA는 인터넷 웹사이트(국립 인사기록 센터, NPRC)의 메인 웹페이지를 통해 군인에 대한 인사기록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 육군에서 제대, 퇴역, 사망한 군인과 그 친척들은 NARA에서 제공하는 인사기록 정보서비스를 통해 우리 육군의 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전역증명서(Certificate of Release or Discharge from Active Duty, 이하 DD Form 214)와, 공식 군 인사 기록(OMPF), 군 복무 간 진료 및 건강기록 등의 사본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7월 8일, NARA와 국방부는 기록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안정적인 보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식 군 인사 기록(OMPF)을 영구기록으로 지정하였으며, 해당 인원이 군에서 전역(제대, 퇴역, 사망 등)된 지 62년이 경과하면 이 기록을 국방부 소유에서 NARA 소유로 합법적으로 이양하는데 동의하였다. 6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록은 영구기록이 아니며, NARA가 아닌 연방 기록센터 프로그램에 따라 유지, 관리된다. 또한 여기에 포함되는 기록들은 영구기록과 같이 이용자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와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Act)에 따라 제한적인 범위의 정보만 공개할 수 있다.

미 육군에서 복무한 후 제대 또는 퇴역한 군인이 본인의 군 인사기록을 요청하기 위해서는(사망 시에는 친척이 신청 가능) 먼저 NARA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식인 군 인사기록 요청서(Standard Form 180, 이하 SF 180)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그림 6 참조).

〈그림 6〉 NARA의 군 복무 기록 요청 웹페이지 및 SF 180 서식¹⁰⁾



이 서식은 NARA 웹사이트에 탑재된 eVetRecs 시스템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경우에는 신청자가 서식을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한 후 우편이나 팩스로 발송할 수 있다. SF 180 서식은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세부 작성지침이 함께 제공된다.

첫 번째 섹션은 해당 퇴역군인의 인사기록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는 란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색을 위해 가능한 많은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기재 항목으로는 해당 인원의 성과 이름,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이전 군 경력(현역, 예비군, 주 방위군으로서 입대일자, 퇴역일자, 군번), 사망일자 등이 있다.

두 번째 섹션은 신청자가 받아보고자 하는 문서를 지정하는 란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문서는 우리 육군의 군 경력증명서에 해당하는 전역증명서(Certificate of Release or Discharge from Active Duty, 이하 DD Form 214)이다(그림 7 참조).

10) 미 국립기록청 웹사이트. 2019. 검색일자 : 2019. 8. 11. <https://www.archives.gov/veterans/military-service-records>,

〈그림 7〉 미 육군 전역증명서 (DD Form 214) 서식¹¹⁾

THIS IS AN IMPORTANT RECORD (REGULATORY)

1. LAST KNOWN FIRST NAME (LAST NAME) ARMY RA 230

2. SERVICE NUMBER RA 111

3. SOCIAL SECURITY NUMBER 1-1-69

4. EXPEDIENT "RETIRED" AND BRANCH OF SERVICE RA 111

5. PLACE OF BIRTH (SEE 214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6. PLACE OF BIRTH (SEE 214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7. SELECTED SERVICE NUMBER RA 111

8. SELECTED SERVICE ORGANIZATION, CITY, COUNTY, STATE AND ZIP CODE RA 111

9. TYPE OF SERVICE (SEE 214c) RA 111

10. TYPE OF PAY (SEE 214c) RA 111

11. TYPE OF PAY (SEE 214c) RA 111

12. TYPE OF PAY (SEE 214c) RA 111

13. TYPE OF PAY (SEE 214c) RA 111

14. TYPE OF PAY (SEE 214c) RA 111

15. TYPE OF PAY (SEE 214c) RA 111

16. TYPE OF PAY (SEE 214c) RA 111

17. TYPE OF PAY (SEE 214c) RA 111

18. TYPE OF PAY (SEE 214c) RA 111

19. TYPE OF PAY (SEE 214c) RA 111

20. TYPE OF PAY (SEE 214c) RA 111

21. TYPE OF PAY (SEE 214c) RA 111

22. TYPE OF PAY (SEE 214c) RA 111

23. TYPE OF PAY (SEE 214c) RA 111

24. TYPE OF PAY (SEE 214c) RA 111

25. TYPE OF PAY (SEE 214c) RA 111

26. TYPE OF PAY (SEE 214c) RA 111

27. TYPE OF PAY (SEE 214c) RA 111

28. TYPE OF PAY (SEE 214c) RA 111

29. TYPE OF PAY (SEE 214c) RA 111

30. TYPE OF PAY (SEE 214c) RA 111

31. TYPE OF PAY (SEE 214c) RA 111

32. TYPE OF PAY (SEE 214c) RA 111

33. TYPE OF PAY (SEE 214c) RA 111

34. TYPE OF PAY (SEE 214c) RA 111

35. TYPE OF PAY (SEE 214c) RA 111

36. TYPE OF PAY (SEE 214c) RA 111

37. TYPE OF PAY (SEE 214c) RA 111

38. TYPE OF PAY (SEE 214c) RA 111

39. TYPE OF PAY (SEE 214c) RA 111

40. TYPE OF PAY (SEE 214c) RA 111

41. TYPE OF PAY (SEE 214c) RA 111

42. TYPE OF PAY (SEE 214c) RA 111

43. TYPE OF PAY (SEE 214c) RA 111

44. TYPE OF PAY (SEE 214c) RA 111

45. TYPE OF PAY (SEE 214c) RA 111

46. TYPE OF PAY (SEE 214c) RA 111

47. TYPE OF PAY (SEE 214c) RA 111

48. TYPE OF PAY (SEE 214c) RA 111

49. TYPE OF PAY (SEE 214c) RA 111

50. TYPE OF PAY (SEE 214c) RA 111

51. TYPE OF PAY (SEE 214c) RA 111

52. TYPE OF PAY (SEE 214c) RA 111

53. TYPE OF PAY (SEE 214c) RA 111

54. TYPE OF PAY (SEE 214c) RA 111

55. TYPE OF PAY (SEE 214c) RA 111

56. TYPE OF PAY (SEE 214c) RA 111

57. TYPE OF PAY (SEE 214c) RA 111

58. TYPE OF PAY (SEE 214c) RA 111

59. TYPE OF PAY (SEE 214c) RA 111

60. TYPE OF PAY (SEE 214c) RA 111

61. TYPE OF PAY (SEE 214c) RA 111

62. TYPE OF PAY (SEE 214c) RA 111

63. TYPE OF PAY (SEE 214c) RA 111

64. TYPE OF PAY (SEE 214c) RA 111

65. TYPE OF PAY (SEE 214c) RA 111

66. TYPE OF PAY (SEE 214c) RA 111

67. TYPE OF PAY (SEE 214c) RA 111

68. TYPE OF PAY (SEE 214c) RA 111

69. TYPE OF PAY (SEE 214c) RA 111

70. TYPE OF PAY (SEE 214c) RA 111

71. TYPE OF PAY (SEE 214c) RA 111

72. TYPE OF PAY (SEE 214c) RA 111

73. TYPE OF PAY (SEE 214c) RA 111

74. TYPE OF PAY (SEE 214c) RA 111

75. TYPE OF PAY (SEE 214c) RA 111

76. TYPE OF PAY (SEE 214c) RA 111

77. TYPE OF PAY (SEE 214c) RA 111

78. TYPE OF PAY (SEE 214c) RA 111

79. TYPE OF PAY (SEE 214c) RA 111

80. TYPE OF PAY (SEE 214c) RA 111

81. TYPE OF PAY (SEE 214c) RA 111

82. TYPE OF PAY (SEE 214c) RA 111

83. TYPE OF PAY (SEE 214c) RA 111

84. TYPE OF PAY (SEE 214c) RA 111

85. TYPE OF PAY (SEE 214c) RA 111

86. TYPE OF PAY (SEE 214c) RA 111

87. TYPE OF PAY (SEE 214c) RA 111

88. TYPE OF PAY (SEE 214c) RA 111

89. TYPE OF PAY (SEE 214c) RA 111

90. TYPE OF PAY (SEE 214c) RA 111

91. TYPE OF PAY (SEE 214c) RA 111

92. TYPE OF PAY (SEE 214c) RA 111

93. TYPE OF PAY (SEE 214c) RA 111

94. TYPE OF PAY (SEE 214c) RA 111

95. TYPE OF PAY (SEE 214c) RA 111

96. TYPE OF PAY (SEE 214c) RA 111

97. TYPE OF PAY (SEE 214c) RA 111

98. TYPE OF PAY (SEE 214c) RA 111

99. TYPE OF PAY (SEE 214c) RA 111

00. TYPE OF PAY (SEE 214c) RA 111

DD Form 214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병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으며, 퇴역 군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훈복지 사업을 위한 주요 증빙서류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신청자들로부터 주로 요구되는 문서로는 각종 의료기록이 있는데, 여기에는 군 복무 간 진료기록(Service Treatment Records), 외래 진료 기록, 치과 진료 기록 등이 있다. 이 섹션에서는 또한 신청자가 해당 문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급여, 고용, 대출, 의료, 가계조사, 기록정정, 기타의 항목 중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세 번째 섹션은 신청한 문서를 수령할 주소와 신청자의 확인 서명을 기재하는 란으로서 신청자가 퇴역군인 본인이거나 퇴역군인의 법적 보호자,

11) 미 국립기록청 웹사이트. 2019. 검색일자 : 2019. 8. 11. <https://www.archives.gov/veterans/military-service-records>,

공인 대리인, 퇴역군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친척임을 밝히고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페이지에서는 신분별 전역(제대, 퇴역, 사망) 시점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각 범주별로 해당 군 인사기록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부서)를 안내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신분별 전역 시점에 따른 군 인사기록 관리 기관(부서)¹²⁾

신분별 전역(제대, 퇴역, 사망) 시점	인사기록 관리 기관(부서)
·부사관/병 : 1912년 11월 1일 이전 ·장교 : 1917년 7월 1일 이전	미 국립기록청(NARA) Research Services
·부사관/병 : 1912년 11월 1일~1992년 10월 15일 ·장교 : 1917년 7월 1일~1992년 10월 15일	국립 인사기록 센터(군 인사기록 부서) National Personnel Records Center (Military Personnel Records)
·공통 : 1992년 10월 16일~2002년 9월 30일	http://www.archives.gov/veterans/military-service-records/
·공통 : 2002년 10월 1일~2013년 12월 31일	미 육군 인사사령부 U.S. Army Human Resources
·공통 : 2014년 1월 1일 이후	Command's web page: https://www.hrc.army.mil/TAGD/Accessing%20our%20Requesting%20Your%20Official%20Military%20Personnel%20File%20Documents
·현역 군인(현역, 예비군, 주 방위군 포함)	

신청자들은 본인에 해당하는 기록이 속하는 범주를 찾고 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기관에 SF 180을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장교 출신 퇴역군인으로서 1917년 7월 1일 이전에 제대, 퇴역 또는 사망한 인원의 군 인사기록은 미 국립기록청(NARA)에서 보존하고 있으므로 NARA를 대상으로 발급 신청 절차를 수속하면 된다. 1917년 7월 1일부터 1992년 10월 15일 사이에 제대, 퇴역 또는 사망한 장교라면 국립 인사기록 센터(NPRC)에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신분에 상관없이 2002년 10월 1일 이후 제대, 퇴역 또는 사망한 군인과 현재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의 인사기록은 미 육군

12) 미 국립기록청 웹사이트, 2019. 검색일자 : 2019. 8. 11. <https://catalog.archives.gov/id/40920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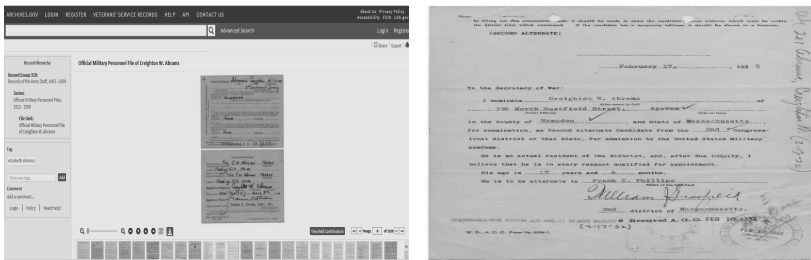
인사사령부 예하 육군 군 기록 분과(ASRB)를 통해 찾을 수 있다.

2) 인사기록 정보서비스 유형 및 특징

미 국립기록청(NARA)는 역사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식 군 인사기록(OMPF)을 별도의 컬렉션으로 정제하여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저명인사 군 인사기록(Records of Persons of Exceptional Prominence, 이하 PEP)로 명명된 이 서비스를 통해 역대 대통령, 국회의원, 군 장성, 훈장을 받은 사회 영웅들, 기타 유명인사들의 OMPF가 해당 개인의 사망 후 10년 이내에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기록들이 개인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배려한 미 국립기록청과 국방부 사이의 협조에 따른 것이다.

NARA 웹사이트에는 현재 500여 개의 개인 PEP 기록이 공개되어 있다. 모든 형식의 PEP 기록은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국립 인사기록 센터(NPRC)의 영구기록 연구실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PDF 형식의 카탈로그를 통해 PEP 목록을 용이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파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또한 NARA는 기록 원문을 수록한 CD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8 참조).

〈그림 8〉 미 국립기록청(NARA)의 저명인사 군 인사기록(PEP) 서비스¹³⁾



12월 31일 사이에 사망했거나 부상당한 인원에 대한 상세한 인사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4. 분석 및 시사점

미 육군의 군 인사기록 관리 체계를 육군 군 기록 분과(ASRB) 및 국립 인사기록 센터(NPRC) 등 관련 조직과 규정, 기록정보서비스 측면에서 살펴 보았으며,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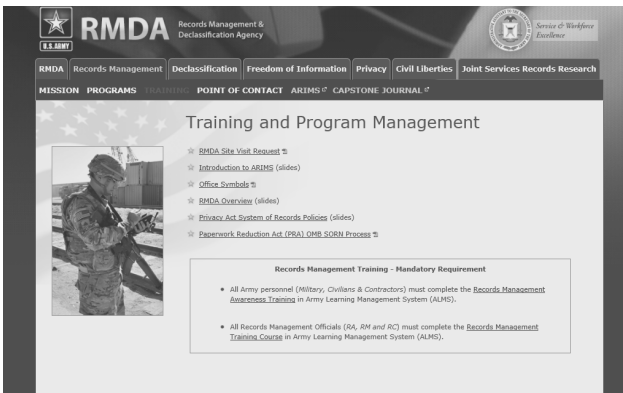
첫째, 미 육군은 군 인사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수집, 이관, 보존, 활용에 이르기까지 기록의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걸쳐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 육군의 공식 군 인사 파일(OMPF)은 육군에 복무하는 각 개인의 병역 관련 기록들을 모아 놓은 컬렉션으로서 일종의 개인 아카이브와도 같다. 이러한 개인 기록 컬렉션을 6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양방향 인사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iPERMS)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이후에는 보다 전문적으로 기록을 보존,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기록청(NARA)로 이관함으로써 향후 보존복지 사업을 비롯한 후속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또한, 군 인사기록 관리를 위한 별도의 규정과 실무지침서까지 마련함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 관리체계를 정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미 육군은 자체적인 인사기록 관리뿐만 아니라 국립기록청과 함께 일종의 인사기록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군 인사기록을 개인 차원에서의 행정적 목적이나 보존복지 사업을 위한 증빙자료로의 활용이라는 일차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누구나 다양한 목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제하고 가공하여 온라인 콘텐츠화한 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국가관과 애국심 고취라는 교육적, 계몽적 목적으로까지 확장시켜 활용하고 있다.

사회적 저명인사들의 군 인사기록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PEP 프로그램이 그 좋은 예시라 할 수 있다.

셋째, 미 육군은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평시부터 기록과 기록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체득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모든 육군 구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기록관리 인식 훈련(Records Management Awareness Training)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록의 정의를 비롯하여 부대에서의 전반적인 기록관리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 온라인 학습센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수강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수료 여부는 개인의 인사관리에 반영된다. 미 육군은 이 외에도 각급 제대 기록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관리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인 군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관리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미 육군의 온라인 기록관리 인식 훈련 화면



또한 각 개인이 반드시 본인의 인사기록에 대한 정확성 여부와 수정, 추가, 삭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소속부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향

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기록의 부정확성 또는 기록 자체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본인의 인사기록을 수정하고자 하는 인원은 일정한 서식의 정정요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그림 11 참조).

〈그림 11〉 미 육군의 인사기록 정정 요청서 서식

iPERMS Corrections Request (Non Board related)
Records Maintenance & Updates Team

Soldier's Data

Name: SSN:

Check One:

Army Active Component (AC) Army Guard Reserve (AGR) Army Reserve (TPU)

Note: We do not process National Guard actions. NG members must contact the HQ iPERMS POC at ng.nor.army.hq.ng-perms-ug-ang@mail.mil

Choose the Nature of Problem:

Document does not belong to the Soldier (Add document name and effective date to the comment box below)

Duplicate Document (Identify each document type and effective date for both documents, using a AWD DOC #/111 and station #/111)

Illegible Document (Must attached legible copy for replacement)

Relocate Adverse Action documents to the Restricted folder (Just use transferring from officer to not restricted to off-duty JMW AR #/111 (for area 3-10/111))

Incomplete/Missing pages (Attach the complete form for replacement)

Inverted Document (Add document type and effective date to the comment box below)

Comments:

Email: Phone:

HR, UA or S1 Only

Note: The request must be submitted to our mailbox by the Soldier's HR professional, S1 or Unit Administrator.

Signature: _____ **Request date:** _____

HR, UA or S1 Only

Send the Request to:
Records Maintenance and Updates Team
mailbox: usarmy.army.hq.milbox-perms-records@mail.mil
Team line: (502) 613-9990 or DSN: 983-9990 Option 1.

이상과 같이 미 육군은 인사기록 관리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철저한 인식과 함께 정교한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기록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이 전투 유공자에 대한 포상업무 추진을 위해 작성한 공적조서의 사례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록관리를 중요시했는가를 알 수 있으며 이는 오래전부터 기록관리가 미 육군의 업무 시스템 내에 깊이 배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12 참조).

훈복지 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적조서는 해당 인원의 주소, 인종, 군사특기, 생년월일, 작전 참가기간, 구체적인 추천 사유 등 핵심 정보들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기 때문에 AMHRR을 구성하는 인사기록으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이 공적조서가 포함된 사료철은 미 8군의 부관부(Adjutant General Section) 문서로 훈장 수여와 관계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이 있는 요원에 대한 훈장 수여 추천장,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공적 조서, 수행 작전 목록 및 관련 증명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관된 기록들이 패키지화되어 있어 향후 검색의 용이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예우와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당위성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될 의무이자 과제이다. 이는 현재 전국 각지에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군의 사기는 물론, 사회 저변의 국가관 확립과 애국심 고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무공훈장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과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전개를 통해 순국선열 최후의 1인까지 찾아 무공훈장을 수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러한 정신을 후대에 전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인사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부실한 기록관리로 인해 초래되는 기록의 부재는 후대가 추진하는 보훈복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미 육군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군 인사기록 관리 시스템의 구축, 국립기록청과의 협업을 통

한 군 인사기록 관리 거버넌스 체계 정립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제공, 군 인사기록에 대한 육군 구성원들의 인식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 육군의 군 인사기록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기록관리 분야의 최상위 기관인 국가기록원과의 협업을 통한 군 인사기록 관리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현재 우리 육군은 군 인사기록 관리 조직 및 규정의 보유 여부 측면에서 미 육군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육군 기록정보관리단과 자체 기록관리 규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 국립기록청은 웹사이트 메인페이지에 퇴역군인의 인사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별도의 섹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쟁 간 전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기록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국가기록원 웹페이지에는 현재 퇴역군인의 인사기록을 위한 섹션이나 전사자 명부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만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6·25 전사자 명부를 올해 6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국립현충원에서 안장심의 자료 일부가 공개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이 전사자 유가족 시료 채취 참여 확대와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율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확대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¹⁶⁾ 미 육군의 경우, 전역한 지 62년이 경과하면 군 인사기록이 미 국립기록청으로 이관되어 영구기록으로서 지위가 격상됨은 물론 보다 전문적인 보존과 활용이 이루어진다. 국가기록원의 규모와 위상, 역할에 있어서 양국 간 차이가 존재함을 감안해야겠으나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상호 공조하는 미국의 현 시스템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건 상 당장 실현에 옮기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군과 국가기록원을 모체로 하여 관련 T/F 구성 및 미 현지 파견 근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전략적 접근

16) KTV 국민방송 뉴스. 2019. 검색일자: 2019. 8. 12. '호국보훈의 달, 참전유공자 예우'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576832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훈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군 인사기록 통합 아카이브의 구축이 필요하다. 6·25참전 유공자회, 월남전 국가유공자회, 전몰군경 유족회, 상이군경회 등 국가 보훈단체와 협조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술기록을 비롯한 각종 인사기록을 지속 발굴함과 동시에 이들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기록을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각 단체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고령이며, 이들의 저마다 소장하고 있는 유·무형의 기록들이 비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속한 기록의 수집과 전문적인 보존, 활용을 위한 통합 아카이브의 설립이 조속히 요구된다 하겠다.

셋째, 군 인사기록에 관한 대국민 기록정보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미 육군의 군 기록 분과(ASRB)가 페이스북 북,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적 환경을 조성한 것과 같이 우리 육군도 자체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 국립기록청(NARA)가 사회적 저명인사들의 군 인사기록을 정제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PEP 프로그램과 같이 국가기록원에서도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국방의 의무에 관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접근성과 개방성을 강화한 기록정보서비스를 통해 군 인사기록에 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일반 국민들과의 소통 채널 마련 및 대국민 안보교육의 장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 육군의 사례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며, 이와 비교·대조할 수 있는 우리 육군의 인사기록 관리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병역제도 측면에서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모병제를 운영함에 따라 직업 군인의 분포 및 복무기간 등 제도적 차이에서 파생되는 인사기록의 종류나 중요도의 차이까지는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기록의 중요성과 철저한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한 가운데 미 육군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육군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향후 관련 법령 및 조직 정비 등 안정적인 인사기록 관리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보훈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거시적으로는 대국민 안보교육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군을 예우하고 보상하는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법령 및 규정]

- 미 육군 규정 600-8-104 Army Military Human Resource Records Management
미 육군 팸플릿 600-8-104 Army Military Human Resource Records Management

[기타 자료]

- 양방향 인사 전자기록 관리 시스템(iPERMS) 가이드
미 부관학교(Adjutant General School) iPERMS 소개 자료

[신문기사]

- 신기진, 2019.5.8. 특별법 제정으로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전개. 검색일자: 2019. 8. 10.
연합뉴스, 2019. 6.20. 노무자 등 비군인 6·25 참전유공자 적극 발굴해 보상. 검색일자: 2019. 8. 10.

[웹사이트]

-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사편찬위원회. <http://archive.history.go.kr>
미 국립기록청. <https://www.archives.gov>
미 국립 인사기록 센터. <https://www.archives.gov/personnel-records-center>
미 육군 인사사령부. <http://www.hrc.army.mil>
미 육군 출판국. <https://armypubs.army.mil>
KTV 국민방송 뉴스. <http://www.ktv.go.kr>
육군 군 기록 분과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iPERMS>
육군 군 기록 분과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_v1f5lj30Go&list=PLXTvGB5BfOiTAZTB0HPfWAOUg2LnBZQ1Y&index=1